

숙박약관

제 1 조 적용범위

당 호텔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에 관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, 이 약관의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등(법령 또는 법령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.

2. 당 호텔이 법령 등 및 관습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할 때는 전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.

제 2 조 숙박계약의 신청

당 호텔에 숙박계약 신청을 하실 분은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제시하셔야 합니다.

- (1) 숙박자명
- (2)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
- (3) 고객의 연락처
- (4) 그 외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2. 숙박객이 숙박중에 전항 제 2 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을 계속 할 것을 신청한 경우, 새로운 숙박계약의 신청으로 처리합니다.

제 3 조 숙박계약의 성립 등

숙박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.

2.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기간분의 요금을 한도로 하여 당 호텔에서 정하는 신청금을 숙박을 시작하기 전에 지불해야 합니다.
3. 신청금은 우선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에 충당하고, 제 6 조 및 제 18 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,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고, 잔액이 있으면 제 12 조의 규정에 따라 요금 지불시에 반환합니다.
4. 제 2 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, 숙박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합니다. 단,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할 때에 당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.

제 4 조 신청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

전조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 호텔은 계약 성립 후동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에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.

2. 숙박계약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, 당 호텔이 전조 제 2 항의신청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기일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따른 것으로 취급합니다.

제 4 조의 2 시설의 감염 방지 대책에 대한 협력 요구

당 호텔은 숙박객에 대해 여관업법(1948 년 법률 제 138 호) 제 4 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협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제 5 조 숙박계약체결의 거부

당 호텔은 다음의 경우, 숙박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본항은 당 호텔이 여관업법 제 5 조에 기술한 경우 이외에 숙박을 거절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.

- (1) 숙박신청이 본 약관에 어긋날 경우.
- (2) 만실로 인해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.
- (3) 숙박하려는 자가 숙박에 관해 법령의 규정,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.
- (4) 숙박하려는 자가 다음의 a 부터 c 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.
 - a.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(1991 년 법률 제 77 호) 제 2 조 제 2 호에 규정하는 폭력단 (이하, ‘폭력단’이라고 함), 동조제 2 호제 6 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원 (이하, ‘폭력단원’이라고 함), 폭력단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
 - b.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기타 단체 일 경우
 - c. 법인의 임원 중에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경우
- (5) 숙박하려는 사람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한 피해나 불편을 주는 언행을 했을 경우(여관업법 시행규칙 제 5 조).
- (6) 숙박하려는 자가 여관업법 제 4 조의 2 제 1 항 제 2 호에 정하는 특정 감염증 환자 등(이하 ‘특정 감염증 환자 등’이라고 한다) 인 경우.
- (7) 숙박에 관해 폭력적 요구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월하는 부담을 요구하였을 경우(숙박하려는 자가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 해소 추진에 관한 법률(2013 년 법률 제 65 조. 이하 ‘장애인차별해소법’이라고 한다) 제 7 조 제 2 항 또는 제 8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 장벽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.
- (8) 숙박하려는 자가 당 호텔에 대해 그 실시예 수반되는 부담이 과중하고, 다른 숙박객에게 숙박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를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 여관업법 시행규칙 제 5 조의 6 에 정한 것을 반복하였을 경우.
- (9) 천재지변, 시설의 고장, 그 외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이 불가능한 경우.
- (10)도쿄도 여관업법 시행조례의 규정에 의거한다.

제 5 조의 2 숙박계약체결의 거부에 대한 설명

숙박하려는 자가 당 호텔에 대해 당 호텔이 전조에 따라 숙박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제 6 조 숙박객의 계약해제 권리

숙박객은 당 호텔에 신청하여 숙박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
2. 당 호텔은 숙박객이 그 귀책사유에 의해 숙박계약의 전부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(제 3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해 당호텔이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구한경우로, 그 지불 전에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한 경우를제외)는, 별표 제 2 의 사항에 의거하여 위약금을 청구합니다.

3.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없이 숙박당일 24 시(미리 도착 예정시각을 명시한 경우는 그 시각을 2 시간 이상 경과한 시각)가되어도 도착하지 않은 경우는, 그 숙박계약은 숙박객에 의해해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제 7 조 당 호텔의 계약해제권리

당 호텔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숙박계약을해제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본항은 당 호텔이 여관업법 제 5 조에 기술한 경우 이외에 숙박을 거절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.

- (1) 숙박객이 숙박에 관해 법령의 규정, 공공질서 또는미풍양속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경우, 또는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.
 - (2) 숙박객이 다음의 a 에서 c 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경우.
 - a. 폭력단, 폭력단원, 폭력준구성원 또는 폭력단관계자기타 반사회적 세력
 - b.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기타 단체인 경우.
 - c. 법인의 임원 가운데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경우
 - (3) 숙박객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동을 한 경우
 - (4) 숙박객이 특정 감염증 환자 등인 경우.
 - (5) 숙박에 관해 폭력적 요구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월하는 부담을 요구하였을 경우(숙박객이 장애인차별해소법 제 7 조 제 2 항 또는 제 8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 장벽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.
 - (6) 숙박객이 당 호텔에 대해 그 실시예 수반되는 부담이 과중하고, 다른 숙박객에게 숙박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를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 여관업법 시행규칙 제 5 조의 6 에 정한 것을 반복하였을 경우.
 - (7)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숙박이 불가능한 경우.
 - (8) 도쿄도 여관업법 시행조례 제 5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.
 - (9) 당 호텔이 지정한 장소 이외에서 흡연,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, 기타 당 호텔이 정한 이용 규약의 금지 사항(화재 예방에 필요한 것에 국한한다) 에 따르지 않은 경우.
 - (10) 도쿄도 여관업법 시행조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.
2.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숙박계약을 해제한경우에는, 숙박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요금은 받지 않습니다.

제 7 조 2 숙박계약해제에 대한 설명

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해 당 호텔이 전조에 따라 숙박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제 8 조 숙박의 등록

숙박자는 숙박일 당일, 당 호텔 프런트에 다음 사항을등록해야 합니다.

- (1) 숙박객의 성명, 주소 및 연락처
- (2) 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과 여권번호
- (3)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2. 숙박객이 제 12 조의 요금 지불을 여행자 수표, 숙박권, 신용카드 등 통화를 대신하는 방법으로 할 때는 사전에 전항의 등록 시에 그것들을 제시해야 합니다.

제 9 조 객실의 사용시간

숙박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도착일 오후 2 시부터 출발일 오전 11시까지로 합니다. 다만, 연속 숙박 시에는 도착일과 출발일을 제외하고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2.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동항에서 정한 체크아웃 시간 이후의 객실 사용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(1) 오후 2 시까지

스탠다드룸, 컴팩트트윈룸	1,000/h 엔(세금포함)
슈페리어트윈룸, 유니버설트윈룸	1,500/h 엔(세금포함)

(2) 오후 4 시 이후에는 객실 요금의 100%

제 10 조 이용규칙의 준수

숙박객은, 당 호텔내에서는 당 호텔이 정하여 호텔내에 게시한 이용규칙에 따르셔야 합니다.

제 11 조 영업시간

당 호텔의 주요시설 등의 영업시간은, 비치한 팜플렛, 게시물,객실내의 설명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.

2. 전항의 시간은 필요에 따라 임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그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공지합니다.

제 12 조 요금 지불

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 1 의내용과 같습니다.

2. 전항의 숙박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하는 여행자 수표, 숙박권, 신용카드 등 이것들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, 숙박객의 도착 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에서 지불해야 합니다.
3.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 가능하게 된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요금을청구합니다.

제 13 조 당 호텔의 책임

당 호텔은 숙박계약 및 이에 관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, 또는이들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,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 단, 손해가 당 호텔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때는 예외로 합니다.

2. 당 호텔은 소방법령을 준수하며 방화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있습디다만, 만일의 화재에 대처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가입해 있습니다.

제 14 조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

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는 숙박객의 양해를 구하고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으로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하기로 합니다.

2.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 시설의 알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금을 숙박객에게 지불하고, 그 보상금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충당합니다. 단,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당 호텔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.

제 15 조 수탁물 등의 취급

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기신 물품 또는 현금과 귀중품에 대해서 멸실,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,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 단,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숙박객이 그 종류 및 가액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에 당 호텔은 10 만원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

2. 숙박객이 당 호텔 내로 반입한 물품 또는 현금, 귀중품에 대해서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관해서는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멸실,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 단, 숙박객이 미리 종류 및 가액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에 10 만원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

제 16 조 숙박객의 수화물 및 휴대품의 보관

숙박객의 수화물이 숙박전에 당 호텔에 도착한 경우에는 그 도착 전에 호텔이 승낙했을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 숙박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 할 때에 전달해 드립니다.

2.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, 수화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남겨진 경우에 당 호텔은 원칙적으로 소유자로부터의 조회 연락을 기다리고, 그 지시를 요구합니다.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귀중품은 발견일을 포함하여 7 일 이내에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며,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3 개월 경과 후 처분합니다. 단, 음식물과 담배, 잡지와 위생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, 기타 폐기물에 상당하는 물품(명확하게 부서진 물품)은 보관 기간 내라도 다음날 폐기 처분합니다.
3. 제 2 항의 경우에 숙박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, 제 1 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르고,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조 제 2 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.

제 17 조 주차에 관한 책임

숙박객이 당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실 경우, 차량 열쇠의 기탁 여하를 불문하고, 당 호텔은 장소를 대여하지만 차량의 관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 단,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 당 호텔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해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기로 합니다.

제 18 조 숙박객의 책임

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당 호텔은 해당 숙박객에게 그 손해 배상을 요구합니다.

2. 금연실에서 흡연이 확인되었을 때는 위약금으로 5 만원을 청구합니다. 다만, 객실의 현저한 오염과 파손, 기자재 고장 등으로 인해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로 실비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제 19 조 계약 언어

이 약관은 일본어 이외에 영어, 한국어, 중국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만, 약관의 각 문장 사이에 불일치 또는 서로 상이한 점이 있을 때에는 일본어가 모든 점에 대해서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.

별표 제 1 숙박요금 등의 내역 (제 12 조 제 1 항 관계)

(조·석식을 포함하지 않는 숙박 시설에 적용)

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총액		내용
	숙박요금	1. 기본 숙박료
	추가요금	2. 그 외 이용요금
	세금	3. 소비세
		4. 숙박세

별표 2 위약금(제 6 조 제 2 항 관련)

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날 계약 신청 인원	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날				
	노쇼	당일	전날	3 일 전	9 일 전
개인(1 실~9 실까지)	100%	100%	50%		
단체(10 실 이상)	100%	100%	80%	50%	10%

- (주)
1. %는 기본 숙박료에 대한 위약금입니다.
 2. 숙박 계약서의 숙박 기간부터 숙박 단축으로 인해 숙박하지 않게 된 모든 날의 분에 대해 그 단축의 신청이 이루어진 날부터 단축으로 인해 숙박하지 않게 된 각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징수합니다.
 3. 숙박 인원의 일부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계약이 해지된 객실 수만큼의 숙박료 위약금을 징수합니다.
 4. 개인(1 실~9 실까지)의 신청이라도 총 숙박 예약 일수가 10 일을 초과하는 경우 단체 고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.
 5. 취소 수수료는 기간, 시기, 숙박일 및 인원수 등에 따라 별도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.